

2021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1년 4월 5일(금) 14:00

2. 장 소 : 화도관 2층 대회의실

3. 대학평의위원회(11명)

■ 참석의원 : 김진곤(의장), 천성오(부의장), 이건영, 박수원, 이경훈, 신상진, 김태훈, 서원빈, 조하연, 김민수, 고민석 (11명)

■ 불참의원 : 없음 (0명)

4. 안 건

가. 자문

- 1) 2020학년도 결산(안)
- 2) 고정자산 변동(안)

나. 규정 개정(안)

- 1) 교원 인사 규정 개정(안)
- 2) 연구년 규정 개정(안)
- 3)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 4)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5.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

【자문】

1) 2020학년도 결산(안)

- 총무처 재무팀장이 2020학년도 결산(안)과 관련하여 수입현황, 전년대비 수입 증감현황, 지출현황, 지출 증감현황 등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이 2020 대학 재정분석보고서 기준 전국대학평균 등록금 수입 의존율 64.4%에서 국립대 포함여부를 묻고 이에 대해 재무팀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다. 또한 의존율과 관련하여 이공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리파악의 필요성을 설명하다. 수입 의존율 비율과 관련하여 사학진흥재단 연보에 근거한 기사와 차이가 존재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조하연 의원은 2020 대학 재정분석보고서 기준 전국대학평균 등록금 수입 의존율과 우리대학의 의존율의 최근 3개년간 추세의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재무팀장이 최근 3개년간 60~65%였다고 답변하다. 또한 우리 대학의 타 대학 대비 의존율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이건영 의원은 2020학년도 결산(안) 보고와 관련하여 대학평의회 안건 보고는 주무부서장이 하여야 하며, 예결산안의 경우 최근 변동 추이를 알 수 있는 분석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특히 이사회 안건 제출시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권고하다.
- 김민수 의원은 2020학년도 결산(안)이 결산과 기획관리위원회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는지의 절차적인 부분을 묻고 이에 대해 기획처에서 상기 과정을 거쳐 최종 상정되어 대학평의회 자문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천성오 부의장이 예결산의 변화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 3개년간 예산규모, 수입지출 현황, 인건비 비중, 기금변화, 법정부담금, 법인부담금 전입현황의 항목과 관련된 자료를 차기 회의부터 제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김진곤 의장은 차기 예결산(안) 진행과 관련하여 총무처장의 보고를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재무팀장 및 예산조정팀장이 참석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의원 전원은 2020 대학 재정분석보고서 기준 전국대학평균 등록금 수입 의존율 64.4%의 근거와 정확한 자료인지의 여부와 최근 3개년간 결산자료의 변동 추이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자문하다.**

2) 고정자산 변동(안)

- 관리처 시설관재팀장이 고정자산 변동(안)과 관련하여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집기비품, 차량 등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신상진 의원은 고정자산 변동(안) 보고에서 토지, 건물, 구축물이 공시지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증감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묻고,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다.
- 조하연 의원은 최근 3개년간 고정자산 변동 추세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은 고정자산 변동(안)과 관련하여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는게 타당한지(공시지가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토지 및 건물의 세부 사항의 표현, 토지와 구축물에서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구분의 의미가 무엇인지의 보완 및 정립의 필요성에 동의하다.
- 박수원 의원이 고정자산 변동(안)의 가액이 법인전입금과의 연동여부를 묻고 이에 기획평가팀장은 무관하다고 설명하다.
- 김진곤 의장은 고정자산 변동(안)의 현재 기재방식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토지의 경우 필지마다 구분하여 설명할 것과 등록금 회계의 표현방식이 맞는지를 검토하여 수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자문하다.

【규정 개정】

1) 교원 인사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제15조(기간의 계산) 및 제21조(책임시간 및 외부출강)
 - 휴직기간 중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정되는 휴직에 육아휴직 추가
 - 책임시수 미충족 시 내부강사료를 기준으로 보수에서 감액 지급 근거 추가
- 이건영 의원은 제15조의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휴직 기간 및 횟수의 제한 여부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해 의원들은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상위 규정에 서술되어 있음을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은 제15조의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의 주체가 여자로 한정되는지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해 의원들은 남녀 제한이 없는 평등한 규정임을 설명하다. 또한 표현의 간결성과 정확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원 전원이 이에 동의하다.

②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산입한다.<개정 2021. 00. 00>

1. 파견 <신설 2021. 00. 00>
2. 육아휴직 <신설 2021. 00. 00>

- 이건영 의원은 제21조의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감액시 징계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묻고, 이에 대해 교무처장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적인 부분은 노무사의 자문과 타 대학 사례로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은 감액의 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원 전원이 이에 동의하다.

② 교원이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여 교수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내부강사료 지급기준을 근거로 미달한 강의시수에 상응한 금액을 차감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2011. 12. 30><개정 2021. 00. 00>

- 의원 전원은 제15조(기간의 계산) 규정과 달리 제21조(책임시간 및 외부출강) 규정은 아래와 같이 경과 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의결하다.

② 부 칙<2021.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① 제21조 제2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가결하다.

2) 연구년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제13조 보수의 반환 규정 삭제
- 서원빈 의원은 제11조(의무) 규정과 연동되어 작용하는 제13조(보수의 반환)규정이 폐지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악용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해 교무처장은 판례에 의해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는 규정 개정으로 모든 대학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 삭제의 타당성을 추가 부연 설명하다.
- 이에 의원 전원은 원안대로 개정(삭제)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3)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 총무처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직원 봉급표 변경(별표 1, 2 변경)
 - 가계보조수당 폐지(제22조 4호 및 제25조의3 삭제, 별표 5 삭제)
 - 체력단련비 폐지(제22조 21호 및 제40조 삭제, 별표 15 삭제)
- 의장과 의원들이 개정의 근거에 대해 묻고 이에 총무팀장은 2020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의한 규정 개정임을 설명하다.
- 이에 의원 전원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4)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 기획처 예산조정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대학원 명칭을 삭제하고 특수대학원으로 통합 수정
 -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추가
- 이건영 의원은 기존 항의 삭제시 규정 이력관리 차원에서 삭제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고민석 의원은 조문 변경시 신중해야 하며 잘못 변경할 경우 새로운 제도에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기존의 구조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박수원 의원이 특수대학원의 정의의 존재여부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한 예산조정팀장이 규정에 정의되어 있음을 설명하다.
- 의원 전원은 향후 우리대학의 교육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5) 기타 사항












- 이건영 의원은 안건 작성시 관련 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한 내용(회의록)을 포함시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다.
- 김진곤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의 회의 일정 및 안건 공지가 있을 때 공지된 안건은 모든 사전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점을 모든 의원에게 공지하고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전 회의일정 등이 적절하게 조율될 필요성의 의견을 제시하다.

6. 폐회

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추가 의견을 묻고 폐회를 선언하다.

2021년 4월 5일

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

| | | |
|-------|-------|--|
| 의 장 | 김 진 곤 |  |
| 부 의 장 | 천 성 오 | (서명)  |
| 평 의 원 | 이 건 영 | (서명)  |
| 평 의 원 | 박 수 원 | (서명)  |
| 평 의 원 | 이 경 훈 | (서명)  |
| 평 의 원 | 신 상 진 | (서명)  |
| 평 의 원 | 김 태 훈 | (서명)  |
| 평 의 원 | 서 원 빈 | (서명)  |
| 평 의 원 | 조 하 연 | (서명)  |
| 평 의 원 | 김 민 수 | (서명)  |
| 평 의 원 | 고 민 석 | (서명)  |